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32,048,761	9,961,463
일반회계	287,130,101	8,613,903
특별회계	44,918,660	1,347,560
기타특별회계	44,918,660	1,347,56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5,315,592	159,468
수질개선특별회계	34,699,288	1,040,979
의료보호특별회계	377,218	11,317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4,526,562	135,79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 세입·세출예산 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“ 해당없음 ” 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“ 변동없음 ” 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6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20,582,68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.